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 2026-82호

고용보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및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 수입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위반자 및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반환납부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, 제62조, 제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1. 4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인

1. 건　명 : 고용보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독촉고지서 및 납입고지서 반송분 등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　거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11. 4. ~ 2026. 11. 19.
5.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지청 고용관리과(3층)에 직접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정규필(Tel 052-228-182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